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4. 11.(화) 12:00

민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도 먹통 없어요

- 민간 클라우드의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한 재해 및 재난 대응
-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적합한 보안인증 등급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
- 4월 12일(수),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및 안전성 관련 고시 개정·시행

□ **클라우드**를 이용하는 **공공 서비스의 신뢰성**을 높이기 위해, **행정·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의 안전성이 강화**된다.

□ 행정안전부는 4월 12일(수), 행정·공공기관이 **민간 클라우드를 이용**하여 국민에게 보다 **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**할 수 있도록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※ 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”란 민간 기업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상용(商用)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함

□ 이에 따라, 행정·공공기관은 **재해·재난 시에도**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**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**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○ **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제공하는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**, 행정·공공기관은 **개별적으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재해·재난에 대응**할 수 있다.

○ 또한 행정·공공기관은 **공공 서비스의 신뢰성**을 높이기 위해 국민서비스와 관련하여 **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**해야 한다.

□ 행정·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 공공 **서비스를 제공할 경우,** 직접 서비스의 운영상태, 운영시설의 안전성 확인 등 **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했다.**

○ 또한, **계약정보, 서버정보, 이용요금 등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정보를 관리**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인 **“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(범정부 EA포털)”에 등록해야 한다.**

□ 지난 1월 개편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**보안인증 제도(CSAP)에 따른 보안인증 변경 사항도 반영**한다.

○ 행정·공공기관이 **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**할 때에는 「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**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급을 식별**하고, 「국가사이버안보센터」 누리집에 게시된 **해당 등급의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**해야 한다.

○ **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**하는 경우에는 **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급을 식별**하고, 사전에 **보안적합성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**해야 한다.

□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“이번에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, 행정·공공기관은 **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**할 수 있게 될 것”이라며, “이는 **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더 넓게 활용될**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디지털정부국 디지털자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혜남 (044-205-2821)
		담당자	사무관	정철원 (044-205-2828)

모두의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('23.1.27)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이용기준 고시 주요 개정 내용**

□ 주요 개정 내용

○ **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(제7조, 제8조, 제14조)**

- 이용 계약의 종료 시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 일시, 저장정보 처리 방법 등을 등기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보

○ **민간 클라우드 이용정보의 등록 및 관리(제9조, 별표1)**

- 계약정보, 서버정보, 이용요금 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정보를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자원 관리포털(범정부EA)에 등록 및 관리

○ **민간 클라우드 이용 안전성 강화(제10조)**

- 민간 클라우드(인프라서비스) 이용 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
- 서비스 제공자 선정 시 안전성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이용중에 안전성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

○ **민간 클라우드 이용 보안성 기준(제11조)**

- 보안인증된 서비스 이용을 우선 고려하되, 국정원 보안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중요도 등급을 식별하고, 해당등급의 보안인증된 서비스를 이용

○ **이용 중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실태 점검(제12조, 별표2)**

- 이용 중인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이용 계약 당사자인 행정·공공기관이 점검

○ **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연속성 확보(제15조)**

- 재난·재해 시에도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